

 <p>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p> 	<h1>보도자료</h1>		 <p>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</p>
	<p>배포일시</p>	<p>2015. 12. 22(화) 총 2매(본문2)</p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서정호 (사업계획) 사무관 정민승, 주무관 이남일 • ☎ (044) 201-3369, 3370 (관리사무소장 교육) 사무관 이상우, 주무관 전성이 • ☎ (044) 201-3372, 3368 		
<p>보도일시</p>	<p>2015년 12월 2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2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</p>		

입주자모집 공고 후 계획 변경, 14일 내 통보해야
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...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 3일로 단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14일 내에 통보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을 현행 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·시행(12월 23일)한다.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, 7월에 공포된 「주택법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사업계획 내용 변경정보 입주예정자에게 통보

○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,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였다.

- 마감자재,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 등의 내용을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에 미리 알도록 하여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.

②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현황 확인행위 간소화

-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에는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, 교육기관이 배치신고 접수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하도록 하였다.
- 서류 제출 절차가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, 배치신고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③ 관리사무소장 등 의무교육기간 단축

-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(4일→3일)하였다.
 - 교육기간이 단축됨으로써, 교육훈련비(입주자 부담) 지출에 따른 관리비가 절감되고, 교육기간 동안 관리업무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사업계획 변경내용 입주예정자에게 통보,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현황 확인행위 간소화, 관리사무소장 등 교육기간 단축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정민승 사무관(☎ 044-201-3369, 사업계획), 이상우
사무관(☎ 044-201-3372, 관리사무소장 교육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